

정 관

주식회사 한독

순 서

제1장 총칙 -----	1
제2장 주식 -----	3
제3장 주주총회 -----	9
제4장 이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12
제5장 계산 -----	17
제6장 부칙 -----	19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회사는 주식회사 한독(이하 본회사라 칭함)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HANDOK Inc.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의약품, 제약원료 및 공업용약품의 연구개발, 소분업과 제조판매업, 수입 판매업 및 수출업
- ② 의약외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연구개발, 소분업과 제조판매업, 수입 판매업 및 수출업
- ③ 의료기술, 디지털 헬스 제품 및 서비스업
- ④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용 식품의 제조판매업, 수입판매업 및 수출업
- ⑤ 위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중간물의 수입 및 수출업
- ⑥ 의약품 수탁가공업 및 수탁 서비스업
- ⑦ 부동산 임대업
- ⑧ 보관 및 창고업
- ⑨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사업에 부수되는 일체의 무역
- ⑩ 통신판매업
- ⑪ 엔젤투자, 창업 인큐베이팅(엑셀러레이팅), 신규 바이오벤처 발굴 및 공유 연구소 운영
- ⑫ 위에 관련되는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1. 본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내 둔다.
2. 본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1. 본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dok.co.kr>)에 게재한다.

2.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2장 주 식

제5조 (본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만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본회사의 주식은 일주의 금액을 금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 설립시의 발행주식수)

본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일천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와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제9조 (명의개서 대리인)

1. 본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가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3. 본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1. 본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본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1 (신주인수권)

1.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①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④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5.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1조 2 (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1조 3 (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3. <삭제>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②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6.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단,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포함되지 않음)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③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시가발행)

본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시가로 발행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3조 (주권의 불소지신고)

1. 주주로서 당해주권의 소지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주권의 불소지에 대한 뜻을 본회사 소정서식에 의해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본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을 때에는 신고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주권은 무효로 한다.

3. 위의 주권 불소지 신고가 있었다라도 주주의 필요에 따라 주권의 발행 및 교부의 청구가 있을 시에는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준일)

1.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1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육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육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대주주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육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2 (전환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육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육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대주주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육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5조 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4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9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장 주 주 총 회

제16조 1 (소집시기)

1.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6조 2 (소집권자)

1. 대한민국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주주총회 개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통지는 대표이사/최고경영자(CEO)가 행한다.
2. 대표이사/최고경영자(CEO)가 유고시에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통지)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총회에서 주주들은 통지서에 명기된 목적사항만을 심의한다.
3.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대한민국내에서 개최 할 수 있다.
4. 주주총회는 주주전원이 서면동의하면 위의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1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29조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제18조 2 (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20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본 정관 또는 대한민국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1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은 총회 개최전에 본회사에 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주의 법정 대리인이 전항의 대리권을 다른 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서도 같이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주는 그 내용이 명시된 1통의 위임장으로써 수개의 총회에 관한 포괄 대리권을 줄 수 있다.

제23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제24조 (이사의 선임)

1. 본회사는 이사 3인 이상 8인 이하를 두며 이사는 제21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중 이사 2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외이사(“사외이사”)이어야 한다.

2.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선임된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이사 중 1인은 본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된다.

3. 이사회는 반드시 이사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선임할 수 있다.

4.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임기가 최종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26조 (이사의 보선)

1.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2. 제1항의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 이사의 잔임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3.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정관에서 정하는 최소 이사의 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1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타 모든 사항

에 대하여 이사회, 본 정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수권받은 바에 따라 회사를 기속할 권한이 있다.

제27조 2 (이사의 보고의무)

1. 이사는 업무집행상황을 3월에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1.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2.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상법 또는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 내용을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 의장)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최고경영자(CEO)가 이에 임한다. 대표이사/최고경영자(CEO)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대표이사/최고경영자(CEO)가 상법 제390조에 따라 소집한다.
2.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개최를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대표이사/최고경영자(CEO)는 즉각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제31조 1 (이사회 결의 방법)

1.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1조 2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 3 (위원회)

1. 본회사는 이사회내에 수개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하며, 위원회의 모든 조치 및 결의는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된다.

4.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1-1 조의 제 3 항 및 제 31 조 2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이사의 경업피지)

이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본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경업중에 있음을 알고 이사로 선임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1 (감사위원회)

1. 본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다.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들 중 2인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될 1인의 사외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회계기록을 검사하고 감사하며, 이사들의 역할 이행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4.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5. 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6.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3조 2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사,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결정된 최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3. 이사는 주주들의 결의로 정한 최대 금액 한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단, 이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발생한

출장 및 기타 비용이 있을 경우 회사는 이사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계 산

제35조 (사업년도)

본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며 매기말에 결산을 행한다.

제36조 1 (재무제표의 작성)

1.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검토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구하여야 한다.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불구하고 본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①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본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②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4.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6. 주주는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의

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

제37조 1 (이익금의 처분)

본회사는 매사업년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① 이익준비금 : 상법상의 이익준비금
- ② 배당금
- ③ 임의적립금
- ④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38조 1 (배당금)

1. 본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배당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회사 소득으로 하며 미지급 배당금에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 2 (중간배당)

1. 본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 462 조의 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2.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①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②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③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④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⑤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⑥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6장 부 칙

제1조 (세칙규정)

본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 할 수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3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958. 8. 1	작성	1982. 2. 26	개정	2006. 3. 7	개정
1958. 8. 6	공증	1985. 2. 28		2007. 3. 29	"
1961. 10. 10	개정	1987. 2. 27	"	2009. 3. 13	"
1961. 12. 26	"	1988. 3. 18	"	2012. 3. 23	"
1962. 6. 7	"	1992. 3. 12	"	2012. 2. 14	"
1962. 9. 25	"	1993. 3. 12	"	2013. 3. 29	"
1963. 11. 6	"	1994. 3. 11	"	2014. 2. 13	"
1965. 6. 30	"	1995. 3. 10	"	2016. 3. 18	"
1968. 4. 20	"	1996. 2. 27	"	2018. 3. 22	"
1973. 12. 10	"	1996. 4. 15	"	2019. 3. 29	"
1974. 12. 16	"	1998. 3. 19	"	2020. 3. 19	"
1976. 5. 26	"	2000. 3. 10	"	2021. 3. 26	"
1977. 2. 28	"	2002. 3. 8	"	2022. 3. 24	"
1979. 2. 23	"	2003. 3. 14	"	2024. 3. 22	"